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9일, 백혜련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8.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혜련 의원)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
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보건의료기술을 진흥·육성하려는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절차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정 기능’이 사실상 이미 법령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종합”을 “조정·종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양행정기관의 계획을 <u>종합</u> 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 한다.	② ----- ----- <u>조정 · 종합</u>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